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0
----------	----

발의년월일 : '98. 10. 20.

발 의 자 : 이상은의원외5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1997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과 건전 재정 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 재고를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성 위원정수 : 7명
-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 총무사회위원회 4명, 도시산업위원회 3명
- 활동기간 : '98. 10. 26 ~ 11. 5까지 (11일간)